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의종류 : 공개(자격제한)경쟁 · 총액 · 최고가 입찰
 - 나. 건 명 : 목포활어회플라자 구)위판동 활어보관수조 임대사용자 선정
 - 다. 위 치 : 목포시 고하대로 641-21, 목포활어회플라자(수산물보관동)
 - 라. 사용·허가기간 : 최초 2년 + 갱신 2년 (최장 4년)
 - 마. 임대(사용·수익허가)재산의 표시
- (예정가는 1년간 연임대료_부가세별도, 입찰보증금 전실 동일 금액)

연번	용 도	실 명	전용면적		예정가(원)	입찰보증금(원)
			(㎡)	(평)		
계	수산물보관동	1실	20.40	6.17	5,038,000	3,000,000
1	활어보관수조	111호	20.40	6.17	5,038,000	3,000,000

- ※ 입찰자가 응찰한 낙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낙찰자는 낙찰가에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연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용도 및 참가자격을 확인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대상 일괄동시입찰(입찰자 1인 1매에 한해 입찰서 작성)

2. 입찰일정

입찰공고기간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신청접수 (참가자격확인)	입찰서작성 및 개찰	입찰보증금 반환
2025. 9. 2.(화) ~ 2025. 9. 9.(화)	2025. 9. 10.(수) 9:00 ~ 14:00까지 수산물유통센터 계좌	2025. 9. 10.(수) 13:00 ~ 15:00까지 활어회플라자 강당	2025. 9. 10.(수) 15:00 부터 활어회플라자 강당	2025. 9. 15.(월) 미낙찰자에 한해 본인명의 계좌로 반환

- ※ 입찰보증금(삼백만원)을 입찰 당일(9월 10일 09:00부터 14:00까지) 응찰자 본인 명의로 지정계좌에 입금하고, 접수처에 입금확인증(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하여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계좌 : 수협 2010-0703-8002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 입찰신청접수 마감 후 원활한 입찰진행을 위하여 강당문을 폐쇄합니다.

(접수마감 후 출입 불가, 입찰신청자에 한해 입장가능)

※ 입찰신청접수 시 구비서류

- 공통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 1통 (신분증, 인감도장 지참),
입찰보증금 입금확인증(통장거래내역 가능), 반환계좌 사본
- 개별구비서류 : 목포시에 사업장을 둔 수산물 관계 종사자 증빙 서류
어민) 어민영업신고증
중도매인) 중매업허가증
유통업) 수산물 도/소매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 입찰신청접수는 반드시 응찰자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목포시에 사업장을 둔 수산물 생산·유통업 관계 종사자
- 어민, 중도매인, 수산물 도소매업 종사자에 한함
- 입찰보증금(삼백만원)을 센터가 정한 지정계좌에 기간내 납부한 자
- 센터에서 제시한 입찰 공고 및 허가조건을 수락한 자로서 낙찰자가 직접
사용하는 자(고용관계는 전대로 간주함, 권리 양도 또는 전대 금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
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허가 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할 수 있는 자
- 아래 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자
 - 1) 행위무능력자(민법상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센터에서 부과한 사용료, 관리비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및 센터와의 계약
미이행 사실이 없는 자

- ※ 경쟁입찰 참가자는 구비서류를 가지고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사전(접수마감 전)에 대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반환

가. 입찰보증금(삼백만원)을 입찰 당일(9월 10일 09:00부터 14:00까지 응찰자 본인 명의로 지정계좌에 입금하고, 접수처에 입금확인증(통장거래 내역)을 제출하여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계좌 : 수협 2010-0703-8002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나. 입찰보증금의 반환 : 미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일로부터 5일 이내 응찰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해 드립니다.

- ※ 입찰신청접수 시 본인명의계좌(반환계좌) 사본 지참 필수

5.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공개(자격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

나. 예정가격(연간 임대료)이상 최고가격 입찰자(1인 입찰도 유효함)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 금액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즉시 재입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구비서류 제출은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 제출하여야 입찰참가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낙찰금(사용료 잔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낙찰자의 계약포기 시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차순위자가 사용허가신청 취소 시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재입찰 공고하게 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신청서는 반드시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에서 발급한 입찰신청서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신청서 제출 후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에 확인하여 본인의

입찰신청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인이 동일 점포에 2회 이상 입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는 모두 무효 처리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공개된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경우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낙찰금(사용료 잔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낙찰자의 계약포기 시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차순위자가 사용허가신청 취소 시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재입찰 공고하게 됩니다.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의 공고내용의 중대한 하자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습니다.

9. 대부(연임대료) 납부 및 계약체결

가. 계약체결 : 연대부(임대)료 전액 납부 후 계약서 작성

※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 잔금 납부기간 : 2025.9.11.(목) ~ 2025.9.12.(금)까지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거나, 사용허가신청기간 이내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센터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가 됩니다.

나. 계약체결 장소 :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관리사무실

다.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부서 :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관리사무실

라. 계약체결시 준비서류

○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양식) 1부.

10. 허가조건 및 기타 유의사항

- 가. 입찰참가자는 필요시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입찰을 하시기 바라고, 낙찰자 운영수익에 대한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는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응찰자는 시장조사,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 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재산관리와 권한을 직접 수행하여야하며 타인에게 점유 또는 전대하거나 담보 제공행위, 양도행위, 기타 권리설정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에 운영 중 투자한 비용이나 자비로 시행한 시설설치·보수 등의 비용청구를 이유로 허가자에게 사용허가시설의 명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소유배상, 화재배상, 음식물배상 등의 보장내용으로 영업배상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이사장은 일방적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1)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하여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 2) 특별한 사유가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규 및 허가조건(계약조건)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3) 행정지시 및 금지행위 위반 등으로 운영기간에 3회 이상 경고장을 통보 받았을 경우
- 마. 입찰자는 별첨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회계예규에 따릅니다.
- 사.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사무실(061-277-9744~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불 임 1.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신청 및 확약서 1부.
2. 임대차 및 운영계약서(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1부.
3. 입찰 참가신청서 1부.
4. 배치도 1부. 끝.

2025. 9. 2.

목포수산물유통센터이사장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신청 및 확약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641-21, 목포활어회플라자
수산물보관동 (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면 적 : 전용 m²

○ 대부(사용)기간 : 2025년 9월 일 ~ 2027년 9월 일(2년)

○ 대부(사용)목적 : 활어보관수조

○ 연대부(사용)료 : 귀 재단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재단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 확 약 사 항 : 활어보관수조 용도 외 수산물을 손질(회를 뜨는 행위 등)하여 판매하는 행위, 수산물판매를 목적으로 건물 실내외에서의 호객행위, 사적 광고물 부착 등 홍보행위를 일절 금하겠음을 확약함.

위와 같이 임대(사용허가)신청 및 확약 합니다.

2025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①

첨 부 : 1. 인감증명서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끝

목 포 수 산 물 유 통 센 터 이 사 장 귀하

[재]목포수산물유통센터 임대차 및 운영 계약서

〈 목포활어회플라자 활어워판동 - 계약일자 : 2025. 8. . 〉

(재)목포수산물유통센터 (이하 “유통센터” 라 한다)와 ○○○ (이하 “임차인” 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목포수산물유통센터의 활어회플라자내 활어보관수조(시설물)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임대차 및 운영을 계약한다.

[임 대 인]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이사장 (인)

[임대물건 및 임차인]

- 소재지 :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641-21, 목포활어회플라자 수산물보관동
- 면적(용도) : 전용 000.00㎡ (활어보관수조)
- 연간임대사용료 : 000원 (부가세 10%포함)

○ 임차인

- 주 소 : 전남 목포시
- 성 명 : 000 (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임차인이 어류, 연체류(낙지, 오징어 등), 조개류, 갑각류, 해조류 그 밖에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 등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수산물(활어) 보관 및 도매 유통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 한다.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유통센터와 임차인은 임대차 운영함에 있어 계약내용의 성실히 이행 등 상호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2년으로 한다.

※ 임대기간 만료 후 1회(2년) 갱신 가능

제 2 장 임대료 및 납부사항

제4조 (임대료 산정)

- ① 연간 임대료는 000원 (부가세 10% 포함)으로 한다.
- ② 제3조의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임대계약이 취소 될 경우 잔여 임대료를 요청할 수 없다.

제5조 (임대료 납부)

- ① 임대료는 연간사용료로 일시납부하며, 고지한 납부기한 까지 일시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비 및 부과금 등의 납부)

- ① 본 시설물 사용에 대한 개별사용요금(전기, 수도 등) 및 공공요금(해수펌프전기세 등 제반관리비)을 부과한달 말일까지 임차인은 유통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월 관리비 미납 및 명도 불이행 시 제반비용을 대비하여 임차인은 유통센터에 보증금 일금 삼백만원을 예치하고, 상황 발생 시 보증금에서 차감한다.
- ④ 임차인은 시설 사용 및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비용부담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관 리 · 운 영

제7조 (시설물 유지관리)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 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수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자의 승낙 없이 공유재산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이에 소요된 비용과 원상회복에 따르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유통센터에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보험가입증권 사본 제출) 임차인은 임대시작일 전에 임대기간에 맞추어 임대건물 및 시설물 가액 이상의 화재보험(임차자배상책임보험 포함)에 대하여 가입 및 납부하고, 그 증서를 유통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통지의무) 임차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유통센터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 임차인의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 2. 기타 임차인에 관한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제10조 (사용허가 시설물내의 출입권한)

- ① 유통센터는 건물의 보존, 시설의 조작, 점검, 방화, 위생, 구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차인의 관리·영업시설에 출입할 수 있으며, 민원발생시 민원해결을 위해 cctv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은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유통센터 및 유통센터의 피고용인이 사전에 임차인의 양해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비상사태 또는 건물 관리상 급박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재시라도 임대시설 내에서 상기사항에 대처할 수 있으며, 동 대처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하여 임차인은 그 책임을 유통센터에 물을 수 없다.
- ③ 화장실·통로 등에 대하여 깨끗한 환경조성, 관광객 및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한다.
- ④ 해수공급 주요시설(밸브, 드레인 등)의 무단 사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100% 책임진다.

제11조 (연고권 및 재산권 등) 임차인은 임대받은 시설에 대하여 본 사용허가로 인한 어떠한 연고권이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 4 장 준 수 사 항

제12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임차인은 임대받은 시설물 일체를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수익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제13조 (임차인의 책임과 의무)

- ① 본 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 ② 임차인은 관리상 소요되는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임차인의 고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사용수익허가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유통센터에 변상하여야 한다.
- ④ 임차인은 임대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장비의 비치, 진화체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⑤ 사용하는 해당재산의 건물 내·외벽에 임차인은 사적인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을 금한다.
- ⑥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자는 사용시설 주변의 쓰레기 수거 및 청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관광도시 목포의 이미지에 걸맞게 사용한다.

제14조 (행위제한)

- ① 임차인은 유통센터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임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 2. 임대재산의 원상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 3. 임대재산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 4. 임대재산 시설물은 “할어보관수조” 용도로 사용하되, 수산물 손질(회를 뜨는 행위 등)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건물 실내·외에서의 호객 행위 등 적극적 판매행위를 금한다.
- ② 임차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공용시설물에 방해가 되는 간판,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상품 등을 방치하는 행위
 - 2.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질 또는 인체에 위해하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 등 유통센터가 그 사용을 금지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 3. 소란스러운 행위, 악기사용, 애완동물 사육 등의 행위
 - 4. 임대시설 내 임의로 주거시설의 설치·행위 또는 기거·숙박행위를 하거나 허가받은 목적물을 본 허가상의 사용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행위
 - 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판매행위 또는 허가받은 시설 이외의 장소에 상품을 보관·적치하는 행위
 - 6. 센터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 목포시의 브랜드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 7. 특별한 행위를 은닉하기 위하여 CCTV를 조작하는 행위
- ③ 규정되지 않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사회 일반통념상 시설물 환경 및 관리운영에 저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불가한다.

제 5 장 임대계약의 취소 등

제15조 (임대계약 취소) 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대허가를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유통센터의 승인 없이 임대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공정거래 관련법규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유통센터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경우
4. 행정지시 및 금지행위 위반 등으로 3회 이상 경고장을 통보 받았을 경우
5. 이 외에도 임대조건상 기재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6조 (계약 취소시의 손해배상) 임차인이 관련법령 또는 임대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취소가 될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유통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임대시설의 명도)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 취소가 된 경우 임대시설물 등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7일 이내에 명도하여야 하며, 계약 취소 후 7일 이내에 사용 중이던 집기나 물건 등을 가져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유통센터는 이를 철거·처분할 수 있으며, 철거와 처분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 6 장 보 칙

제18조 (조문해석 및 일반법령의 적용 등)

- ① 본 계약서의 각 조항의 해석상 상호간에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합의하여 결정하며,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②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 관계법령 및 연관규정을 따르기로 한다.
끝.

입찰 참가 신청서				일련번호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붉은글씨 해당칸)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000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대상	목포활어회플라자 수산물보관동 활어보관수조	입찰신청 호실	_____호	
	입찰 신청금액	일금 _____ 원			
입찰방법	• 경쟁입찰,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 • 예정가격(연간 임대료)이상 최고가격 입찰자(1인 입찰도 유효함)를 낙찰자로 결정. • 동일 금액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즉시 재입찰하여 낙찰자 결정.				
본인은 위의 목포활어회플라자 수산물보관동 활어보관수조 임대사용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5 년 9 월 10 일 신청인 : (인)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경리관 귀하					
※ 주의사항 1. <u>입찰가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요하는 때에는 새 용지를 사용 하십시오.</u> 2. <u>일단 제출된 입찰참가신청서는 취소, 변경이나 교환이 불가능합니다.</u> 3. 붉은 글씨의 해당칸만 기록하십시오.					

참고

배치도

○ 목포시활어회플라자 수산물보관동 활어보관수조

